

제2818호
2021. 4. 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규칙공포]

제738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자 치 법 규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를 삭제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7. 디지털행정혁신(비대면) 추진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6호를 삭제하고, 제17호에서 제1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직원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21조(도로시설과) -----. 1. ~ 7. (현행과 같음) 8. <u>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제22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u>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u>	제22조(치수과) -----. 1.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32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u>직원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 9. <u>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u> 10. ~ 16. (생략) <u><신설></u>	제32조(행정지원과) -----. 1. ~ 7. (현행과 같음) 8. <u>직원후생에 관한 사항</u> <u><삭제></u> 10. ~ 16. (현행과 같음) 17. <u>디지털행정혁신(비대면) 추진에 관한 사항</u>
제33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16. <u>디지털행정혁신(비대면) 추진에 관한 사항</u> <u><신설></u> <u><신설></u>	제33조(기획조정과) -----. 1. ~ 15. (현행과 같음) <u><삭제></u> 17. <u>직원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 18. <u>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u>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가. 효율적 구정운영을 위한 부서간 분장사무의 합리적 재조정
- 나. 조직개편 등에 따른 대응력 제고를 위한 담당사무 명확화

2. 주요내용

- 가. 부서간 업무이관 반영 정비
 - 직원교육훈련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과 → 기획조정과
 - 디지털행정혁신(비대면)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과 → 행정지원과
- 나. 부서기능의 연계성을 고려한 분장사무 정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치수과 → 도로시설과